

제439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 시 2026년9월9일(수)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김승원)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김승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3.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김승원)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
4.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김승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5. 특별감찰관후보자(최길수) 인사청문요청안
6. 특별감찰관후보자(최길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7. 특별감찰관후보자(최길수)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
8. 특별감찰관후보자(최길수)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23)
1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3. 소방공무원 보건의안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7)
14.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56)
1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62)
1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59)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8)
1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32)
1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9)
20.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1)
2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2)
2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31)
2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9225)

2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6)
25.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7)
2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9.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0.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5.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4625)
36.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14)
3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3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39.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박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30)
40.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90)
41.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45)
4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42)
4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37)
4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5)
4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01)
4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18)
4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52)
4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22)
4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3)
50.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55)
5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48)
5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2)
5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2)
5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5)
5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07)
5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60)
5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75)

5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84)
5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37)
6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93)
6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4)
6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16)
6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48)
6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568)
6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4)
6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3)
6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05)
6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40)
6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5)
7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64)
7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6)
72.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85)
7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43)
74.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41)
7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52)
7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94)
7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12)
7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69)
7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61)
8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06)
8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41)
8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86)
8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 2214465)
8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62)
8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53)
86.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9)
8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69)
8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79)
8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569)
9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26)
9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68)
9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96)
9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9)
9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67)
9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67)
9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08)
9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9)
9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8)
99.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87)
100.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25)
101.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18)
10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94)
10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47)
10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78)
105.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79)
106.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80)
10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24)
10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22)
10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7)
11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25)
11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3)
11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48)
113.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6)
1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21213)

115.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0)
116.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6)
117.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2)
11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1)
119.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4)
1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4)
1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0)
12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9)
123.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9)
12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7)
12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3)
126.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5)
127.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6)
12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1)
129.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2)
13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8)
131.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3)
13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89)

상정된 안건

1.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김승원) 인사청문요청안 11
2.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김승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1
3.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김승원)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 11
4.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김승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1
5. 특별감찰관후보자(최길수) 인사청문요청안 11
6. 특별감찰관후보자(최길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1

7. 특별감찰관후보자(최길수)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	11
8. 특별감찰관후보자(최길수)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1
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323)	26
1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26
1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26
1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27
13. 소방공무원 보건의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7)	34
14.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56)	34
1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62)	34
1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59)	34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8)	34
1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32)	35
1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9)	35
20.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1)	35
2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9222)	35
2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9231)	35
2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9225)	35
2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6)	35
25.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7)	35
2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5
2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5
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5
29.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5
30.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5
3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5
3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5
3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5

3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5
35.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4625)	35
1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44
36.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14)	44
3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44
3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44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51
39.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30)	51
40.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90)	51
41.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45)	51
4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42)	51
4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37)	51
4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5)	51
4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01)	51
4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18)	51
4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52)	51
4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22)	51
4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3)	52
50.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55)	52
5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48)	52
5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2)	52
5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2)	52
5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5)	52
5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07)	52
5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60)	52
5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75)	52
5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84)	52
5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37)	52
6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93)	52
6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4)	52
6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16)	52

6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48)	52
6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568)	52
6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4)	52
6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3)	52
6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05)	52
6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40)	52
6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5)	52
7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64)	52
7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6)	52
72.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85)	52
7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43)	52
74.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41)	52
7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52)	52
7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94)	52
7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12)	52
7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69)	52
7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61)	53
8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06)	53
8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41)	53
8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86)	53
8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65)	53
8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62)	53
8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53)	53

86.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9)	53
8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969)	53
8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79)	53
8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569)	53
9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26)	53
9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68)	53
9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96)	53
9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9)	53
9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67)	53
9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67)	53
9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08)	53
9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9)	53
9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8)	53
99.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87)	53
100.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25)	53
101.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18)	53
10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94)	53
10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47)	54
10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78)	54
105.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79)	54
106.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80)	54
10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24)	54
10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22)	54
10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7)	54
11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25)	54
11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3)	54

11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48)	54
113. 감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6)	54
1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21213)	54
115.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0)	54
116.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6)	54
117.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2)	54
11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1)	54
119.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4)	54
1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4)	54
1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0)	54
12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9)	54
123.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9)	54
12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7)	54
12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3)	54
126.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5)	54
127.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6)	54
12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1)	54
129.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21202)	55
13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8)	55
131.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3)	55
13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89)	55

(10시16분 개의)

○위원장 서영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법무부장관후보자 김승원 및 특별감찰관후보자 최길수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한 안건들을 심사하고 3개 위원회 소관 30건의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한 후에 94건의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이 있습니다.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오늘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관련 안건을 상정합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김승원)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김승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3.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김승원)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
4.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김승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5. 특별감찰관후보자(최길수) 인사청문요청안
6. 특별감찰관후보자(최길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7. 특별감찰관후보자(최길수)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
8. 특별감찰관후보자(최길수)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18분)

○위원장 서영교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김승원) 인사청문요청안과 특별감찰관후보자(최길수) 인사청문요청안 및 관련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김승원)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되어 9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특별감찰관후보자(최길수)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9월 4일 국회에 제출되어 9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사일정 제2항 및 제6항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은 법무부장관후보자 김승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9월 15일에 실시하고 특별감찰관후보자 최길수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9월 18일에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실시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7항의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은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제출을 위원회 의결로써 요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각 의원실로부터 접수된 자료제출 요구 대상 기관과 건수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후보자 김승원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는 9월 11일까지, 특별감찰관후보자 최길수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는 9월 14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실 경우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자료

제출요구서를 행정실에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 명의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 및 제8항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8항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아직 간사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님들께서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협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위원장님, 증인 채택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안건들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토론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의사진행발언이 있는 관계로 간사님께 3분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또 더불어민주당 간사님께도 3분의 의사진행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간사님.

○박형수 위원 신청도 안 했는데 왜 의사진행발언을 주는 거예요?

○주진우 위원 신청도 안 한 사람에게 줍니까?

○김의겸 위원 신청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순서를 좀 똑바로 하세요, 진행을.

○위원장 서영교 머리 이쁘게 하고 와서……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오늘 대정부질문 있으신가?

○박형수 위원 별것을 다 신경 쓰시네. 신경 좀 끄세요.

○위원장 서영교 있나 본데.

○박형수 위원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박형수 위원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김승원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를 또다시 증인 아무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강력한 분노와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어제 오후에 민주당 김의겸 간사님과 증인·참고인 채택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 요구를 하는, 우리 당 위원들이 요구하는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의 명단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또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증인, 그 누구인지까지도 민주당 간사님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민주당 간사님께서 민주당 위원님들과 협의해 보고 난 후에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다렸습니다. 밤새도록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에서야 단 1명의 증인도 채택할 수 없다라는 것이 민주당 위원들의 생각이다라고 전달해 왔습니다.

이거 도대체 밤새워 가지고 논의한 게 증인 한 사람도 없이 청문회 하겠다는 이겁니까? 지금 온 국민의 시선이 이 김승원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에 쏠려 있습니다. 그 국민적 의혹들 그것을 규명해 주고 해소해 주는 것이 그게 법사위 또는 인사청문회가 해야 될 책무입니다.

그런데 증인 하나도 없이 맹탕 청문회를 운영하겠다고요? 인사청문회 이미 결론 다 정해 놔는데 뭐 하려고 합니까? 그냥 통과시키세요, 그냥.

이 김승원 법무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지금 우후죽순으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브로커 양 모 씨라는 사람과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쳐서 식약처의 임상실험 허가를 받게 해 줬는지 온 국민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

약회사, 거기에 투자했던 수많은 주주들이 피해를 보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어떻게 된 것인지 진상규명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의혹들이 있고 거기에다가 김승원 후보자의 배우자는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또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고 우리 당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 사람의 증인도 없이 이 청문회를 그냥 하겠다고요? 국민들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민주당 위원님들과 위원장님 또 민주당 간사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렇게 청문회를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증인 채택에 대해서 전향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김의겸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3분 해 주세요.

○김의겸 위원 김의겸입니다.

우선 박형수 위원님 밤을 새셨다는데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위원님 생기가 있어 보이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저 44명의 명단을 받아 봤는데요. 아까 박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특정 사건, 제넨셀 사건과 관련된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그 사건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법무부장관 때 있었던 일입니다. 두 분이 다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었고 그리고 김승원 의원을 잡으려고 달려들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수사를 했습니까? 한동훈 장관의 오른팔, 왼팔이라고 할 수 있었던 당시 대변인, 부대변인을 서부지점으로 내려보내서 거의 2년 넘게 11명의 검사들을 투입해서 집요하게 강력하게 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팽 났습니다. 기소조차 못 했고, 이른바 검사들 표현으로 하자면 골인을 시키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그게 만일 문제인 정부 때나 또 이재명 정부 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어, 이거 이상하네. 수사가 미진했거나 또는 외압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석열·한동훈 혈안이 되어서 털털 탈탈 털었던 사건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때 위원님들의 청문회 때보다 한 백배 천배 더 강력한 검찰의 청문회를 거쳤었다. 그런데 그때 실패한 사건을 다시 가지고 와서 지금 무한 되돌이 반복을 하려고 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형수 간사님과 더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오늘 자정까지는 시간이 있는 것 같으니까 더 협의를 할 텐데 박 간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입장과 또 저희들의 입장이 있다는 것도 함께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상현 위원 (손을 들)

○위원장 서영교 토론 시간 있습니다. 토론 시간을 드릴게요.

○윤상현 위원 짧게……

○위원장 서영교 예, 토론 시간에 하세요.

○윤상현 위원 아니, 이거만 짧게……

○위원장 서영교 그러니까 이 전체를 놓고 토론하는 거예요. 지금 토론으로 들어갈 거예요.

○윤상현 위원 증인 채택만 관련해서……

○위원장 서영교 그러니까 증인 채택도 그렇고 전부 다 놓고 토론하시면 돼요. 먼저 시켜 드릴게요, 그러면. 잠깐요.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입니다. 김승원 법무부장관후보 인사청문회이고요.

여러분 같이 일하셨잖아요. 박형수 간사님, 간사님으로 같이 일하셨잖아요. 얼마나 일 잘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박형수 위원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진행이나 하세요. 뭘 잘해요?

○위원장 서영교 내용 다 알면서…… 같이 일하셨고 일하면서 이렇게 좋은 간사 없는 거 박형수 간사가 더 잘 알 것이고……

○박형수 위원 그렇다고 통과시켜 줘요, 그냥? 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위원장 서영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일 많이 해 왔고, 훌륭한 일 많이 해 온 거 박형수 간사가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김민전 위원 중립적으로 진행하세요.

○김태규 위원 저는 몰라요. 나는 몰라.

○위원장 서영교 아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일해 왔고 어디서 뚝 떨어져 온 사람도 아니고 같이 일했잖아요. 같이 수없이 많은 일 했고 거기서 저 사람만한 사람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박형수 위원 법무부장관 대변인이요?

○위원장 서영교 대변인이 아니라 내가 위원장으로 같이 일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불기소…… 아까 양 모 씨랑 무슨 관계냐고요? 아니, 양 모 씨는 윤석열하고 관계가 더 깊더라.

○박형수 위원 그거 밝혀요, 그러면. 증인 출석시켜서.

○위원장 서영교 그리고 김건희하고 관계가 더 깊고.

○박형수 위원 잘됐네. 출석시켜서 밝힙시다, 그러면.

○위원장 서영교 그쪽에 엄청난 이름들 나왔더라. 그래요, 안 그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거는 윤석열, 한동훈이 법무부장관으로 있을 때 탈탈 털 거 아니에요? 탈탈 털어서 양 모 씨 불기소, 무혐의…… 아니, 양 모 씨 무혐의인데 왜 김승원은 기소유예야 도대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억울해서 김승원 의원이 헌법소원 낸 거 아닙니까?

내가 똑같이 탈탈 털러 봤어요. 나를 기소유예하더라고. 내가 억울해서 헌법소원 냈어요, 나는 그전이지만.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했어요. 내가 탈탈 털러 본 사람이예요.

국민 여러분, 검사가 3년 동안 11명 투입돼서 탈탈 털어 놓고 미안하다 사과해야지. 그 때 법무부장관 한동훈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아니에요? 그 서슬 퍼렇던 윤석열과 한동훈이 탈탈 털어 놓고 아무것도 없었어. 그랬으면 미안하다고 해야지 기소유예해 놓고 이제 관계도 없는 걸 가지고 이리저리 엮어 가지고……

○박형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인 불러 가지고 규명해 보자고, 진짜 그 말이 맞는지.

○위원장 서영교 그리고 김승원 간사 께어 보셨잖아요. 께어 봐 놓고……

자, 이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손 들어 주세요. 네 분.

또 이쪽 토론하실 분은요? 두 분.

○김의겸 위원 일단 봐서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중간에 토론하실 필요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면 우선 윤상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윤상현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김의겸 간사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면 꼭 윤석열 정권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이용을 해서 김승원 의원 죽이기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김기표 위원 맞습니다. 맞아요.

○윤상현 위원 맞습니까? 맞으면 맞을수록 김기표 위원님, 그러면 한동훈 장관 부름시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 여기 증인으로 채택합시다.

또 아까 그 문서에 양수진 씨 나오는데 브로커로 규정되고 있는 양수진 씨 또 제넨셀 그 대표 강세찬 씨 또 식약품처장 김강립 씨, 이거는 핵심 연결고리의 중간에 김승원 후보자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불러야지요, 어떤 청탁을 받고 어떤 대가성을 받기로 했는지. 또 김승원 후보자가 제넨셀 관련 주가조작 사건에 관련됐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이것은 반드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규명해야 할 사안입니다. 더군다나 주가 조작으로 인해서 3만 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사안에서 적어도 한동훈, 김강립, 양수진, 강세찬 네 분은 꼭 증인으로 채택돼야 된다. 이분들이 이미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국회에서 진술을 못합니까?

더군다나 이 후보자 진영에서는 계속해서 양수진 씨 문자나 녹취록이 나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위다, 과장이다. 그러면 그럴수록 공익적 목적으로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헌데 이분들을 빼고 하겠다 그러면 청문회가 한마디로 일방적인 해명이다. 검증이 아니라 해명이다. 그래서 이분들, 핵심 관계자들은 증인으로 넣어야 된다.

사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김민석 총리후보자 청문회도 증인 없었습니다. 한성숙 총리 그때도 야당이 추천하는 증인들 없었습니다. 민주당 정권 내내 증인·참고인 없이 이렇게 청문회를 진행하려고 합니까? 이런 맹탕 청문회,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인·참고인 없이 맹탕 청문회를 한다면 일방적인 기자 해명하고 똑같다. 한마디로 양꼬 없는 찌빵격이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또 두 분 간사위원님께서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핵심 증인 한동훈 의원 꼭 넣어 주십시오. 양수진, 강세찬, 김강립 소위 말해서 제넨셀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이분들은 꼭 증인으로 채택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아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김동아 위원 저부터 해요?

○위원장 서영교 예, 이쪽 먼저 토론하시게 할까요?

○**김민전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왔다 갔다 해야지요.

○**김동아 위원** 저기 네 분이시니까 저희부터 하시지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김동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동아 위원**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최근에 일련의 사건이나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은 이미 법원에서 강 모 씨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강 모 씨에 대한 무죄 판결문에서 법원은 명시적인 청탁의 약속이 없었다라고 명확하게 판결을 했고 또 김승원 의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서를 보더라도, 사유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 수수한 돈도 없고 공여자가 범죄 가담 정황도 없고 국회의원으로서는 민원 전달 측면’이라고 이거는 윤석열 정부의 검사들이 쓴 기소유예 처분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종결된 사건을 가지고서 지금 한동훈 의원이 하나하나씩 풀고 있는 이 수사 쪼가리들을 가지고서 저희가 무슨 대단한 의혹이 있는 것만양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하수인입니까? 한동훈 의원이 주장하면 그게 다 사실이고 그걸 진상 규명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도 객관적으로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 때 얼마나 열심히 수사를 했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 박성재 법무부장관 때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건입니다. 이미 완전히 깔끔하게 종결된 사건이고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다고 해서 김승원 후보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그 기소유예 처분마저도 뒤엎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소유예 처분이 무죄냐? 아닙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뭐냐? 기소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기소하면 무죄 받을 것 같고 아니면 벌금도 10만 원도 안 나올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겁니다. 기소유예 사유를 보더라도 무죄임이 명백하고 또 판결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강 모 씨에 대한 판결에서 아니, 청탁을 했다는 사람이 청탁이 아니더라는 판결이 있는데 그러면 청탁을 받았다는 것을 밝힌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저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제기하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좀 객관적으로 그 사안을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동훈 의원이 검찰 내부 자료를 불법적으로 공개해서 지금 고발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법무부에 공개적으로 질의를 드려 봤더니 그 자료가 결코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수사가 진행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차분히 그 수사를 지켜봐야 되지 저희가 이미 종결되고 완결된 그 사건에 대해서 이 신성한 국회에서 다시 끌어내려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전 위원님.

○**김민전 위원** 김민전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있으시면 여기서 다시 한 번 김승원 후보가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으시면 되지 않겠는가, 뭐가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김승원 후보와 관련된 논란은 너무나 굵직굵직 큰 논란들입니다. 지금 주로 말씀하신 3만여 명의 피해자가 있는 주가조작 논란도 너무나 크고요. 실험했던 쥐들이 피를 토하

고 죽은 그 약이 임상까지도 허가가 났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이고요. 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몸가짐이 올바른 몸가짐인가, 사생활과 관련된 논란도 너무나 큰 문제이고요.

저는 주로 교육을 보는 입장에서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역구에서 운영한 소위 올리브학교라고 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학교라는 명칭을 그렇게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대안교육기관으로 인정하지도 않아서 대안교육기관법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올리브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하 1층에 있는 놀이시설 이것은 건축물법 위반 의혹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학교를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인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약자를 위한 법무부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주로 배우자가 이 학교를 운영한 것을 아마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학교가 그동안에 이렇게 많은 위법 논란이 있고 오죽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당장 그날 뛰어가 가지고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조합에서 상당히 많은 기부금을 모집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기부금에 대한 회계처리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슨 녹취록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의 후보가 해 온 또 후보의 가족이 해 온 총체적인 부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후보의 가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은 김승원 후보 자신이 국회에 있을 때 많이 주장했던 바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총체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증인들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김민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표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기표 위원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그런데 박형수 간사님, 한동훈 의원은……

○곽규택 위원 위원끼리 토론하는 것 아니에요.

○김기표 위원 한동훈 의원 지금 증인으로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국힘 내부에서……

○박형수 위원 그것 위원들이 각자 알아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뭘 그것을……

○김기표 위원 아니요, 그냥 제가 허공에 불러 봤습니다.

국힘 내부에서도 의견이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 증인 신청 명단에는 한동훈 의원이 없었어요. 윤상현 위원님, 그것 좀 확인하시고 토론하십시오.

그리고 공직후보자 검증이 선동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 사실관계 자체가 명확히 밝혀지고 그 사실관계에 따라서 장관을 할 사람이 맞는지를 따지는 것이 인사청문회입니다.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되지요. 국회가 조작기소와 같이 국정조사를 보통 먼저 하면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의혹이 제기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결국 해소되는 것은 수사기관,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로 해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밝힐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요.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증인들 얘기 들어보는 것인데, 그 의혹은 결국 수사로 판결이 되고 재판으로 확정이 돼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김승원 후보자의 경우는 이미 그 순서가 바뀌어서 윤석열 검찰이 3년 동안 탈탈탈탈탈탈 털었어요. 그래서 이미 기소유예 처분이 난 것이고, 저는 그 기소유예 처분도 굉장히 비겁한 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특수부 검사들이 3년 동안 그렇게 털면 ‘이것 안 되겠는데’ 하는 것도 자신들이 여론으로부터 비난받을 것을 두려워 해서 ‘죄는 있는데 내가 봐줄게’ 이런 식으로 기소유예 처분 많이 하지요. 저는 이 사건도 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재점화된 게 뭐니까? 한동훈 의원이 어디서 구했는지 몰라도, 저는 그것이 검찰 수사기록이라고 보고 있는데, 검찰 수사기록 들고와 가지고 짜깁기하고, 그것을 받아서 일부 보수 언론들이 마치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도가 되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국면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관계 자체가 이미 한동훈 의원이 자기 입맛대로 짜깁기한 것이고 법원의 재판이나 검찰의 처분은 김승원 후보자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잘못이 없다고 인정이 된 사안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보내 온 증인명단 보면 어떻습니까? 한동훈 의원이 하고 있는 선동을 뒷받침하려고 하는 증인명단일 뿐입니다. 그 사람들 다시 불러 가지고 한동훈 의원이 하는 것처럼 짜깁기한 증거 얘기하고 진술하게 하도록 할 겁니까? 그게 인사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태도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관계 자체를 명확히 해야지요. 지금 수사와 재판보다 더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의 증인 신문은 무리한 것이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 토론해 주시고요.

오늘 갈 길이 참 멀어요. 그리고 인사청문회 때도 하면 되는데, 어떻든 토론을 너무 많이 하면 그렇기는 한데…… 하시고요. 갈 길이 멀다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규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발언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마이크 없이 그냥 결론 내고 가시려 그러니까 싱긋 웃으시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시대요.

○위원장 서영교 좋은 말 했다고 끄덕끄덕 한 거예요.

○김태규 위원 그러실 것 같습니다.

증인 없이 간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은 ‘그래, 결론 내고 가는구나’, 이미 항간에는 그런

얘기들이 과다합니다. 하나 떨어뜨리고 하나는 꼭 쥐고 간다, 언론사에 그런 압력이 있다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항간에 과다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증인 채택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 방향을 정했다라는 걸 국민들한테 알리는 겁니다.

당당하시면요, 여기 나오시는 분들 다 선서하고 증언하고 합니다. 그리고 국회법에 증언 위증에 대해서는 일반 위증보다도 형벌이 굉장히 더 셉니다. 그래서 여기서 증언하는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큼니다. 당당하시면 나와서 증인들 증언도 듣고 사실·실체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가서 국민들 의혹도 해소하고, 그리고 그나마 가지고 있는 국민들 의혹 그것도 여기서 깨끗이 털고 가는 게 안 맞겠습니까?

저희들이 잘못 지적하고 진짜 법원의 판단이 맞고 오류가 있었던 거라면 그 역시도 여기서 털고 저희들이 잘못된 거면 잘못된 것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아예 들어가는 것조차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은 이미 의도를 가지고 청문회를 여전히, 지금까지 그리해 왔듯이 우리르 병풍 세우듯이 또 병풍 세우겠다는 것 외에는 진정한 청문을 할 의사가 없다라고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청탁과 관련해서는 기소유예는 무죄 아닌 것 법률 상식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8개월 구형 얘기가 있었다는 것도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지금은 청탁에서 그치는 게 아니지요. 지금 주식 작전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의료보험 편법 탈루 의혹도 있고요, 세금을 미루고 있다가 한꺼번에 다 냈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신고 누락한 것도 지금 얘기되고 있고,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 다 정확히 밝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탁에서 기소유예 받은 것 그것 하나 빌미 삼아 가지고 모든 걸 틀어막겠다는 것 그것은 아예 애초부터 이 청문회 형식적으로 만들고 우리는 결론 내 놓고 내달리겠다는 것, 여전히 민주당 잘하는 그것 또 하겠다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얘기하지 마시고요. 한동훈 의원 얘기하지 마시고 당당히 가십시오. 당당히 가시면, 국민들이 그 과정 속에서 당당한 모습 나오면 그것 인정하고 오히려 민주당 믿어 주실 겁니다. 뭐가 그렇게 구린 게 많아 가지고 숨기고 가려 그러고 증인들 다 내쫓으려 그러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한 태도 자체가 민주당이 당당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겁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정감사도 아니고요, 인사청문회에는 증인을 그렇게 많이 채택한 적도 별로 없고요. 증인 없이 가는 게 보통 인사청문회입니다.

○박형수 위원 한 사람도 채택 안 한 경우는 없었어요.

○위원장 서영교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 없이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여러분, 이게 잘못 전달될까 봐,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그 증인들은 장관후보자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대고 수없이 많은 분들이 물으려 되는 거지…… 아니, 배가 산으로 갑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갈게요.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저……

○위원장 서영교 두 분 아까 손 들었으니까…… 순서가 있잖아요.

이쪽에 아까 김의겸 위원님……

○**김의겸 위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마지막으로요? 그런 순서는 없는데.

○**김의겸 위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주진우 위원 토론해 주세요.

○**주진우 위원** 민주당 위원님들이 평소에 많이 얘기하시던 게 ‘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지 않았나요?

그리고 이번에 법무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국민의 관심이 높은 것은 단순히 지금 문제 제기가 돼서 일부 언론에서 이것을 부추겼다 이런 것보다도 그만큼 충격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인사청문위원장을 하실 법사위원장부터 해서 민주당 위원들이 전부 다 답을 정해 놓고 인사 검증을 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게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은 인사검증 위원 아닙니까? 같이 국민을 대표해서 검증을 해야지, 그것을 좌우는 방향으로 한다면 국민들도 납득할 수 없고.

또 김승원 후보자가 서영교 위원장한테 청탁 문자 보낸 것도 나왔지 않습니까? 송구하다라고 하면서 본인 봐달라는 문자를 보낸 건데 그 문자에 휘둘러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증인을 제대로 신청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사안은 그냥 한 장관의 인사청문회 수준을 넘어서서 굉장히 국민의 어떤 분노를 자아내는 관심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 때 다 기억하실 겁니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코로나 백신 같은 것을 사실상 국민들에게 강요해 가지고 지금도 피해를 입고, 코로나 백신 약으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 유족들이 소송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유족분들이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진상규명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그 코로나 사태라는 급박한 상황을 이용해서 그냥 쥐도 먹으면 죽는 쥐약 같은, 거의 독약에 가까운 것을 얼렁뚱땅 주가를 올리기 위해 가지고 대충 임상승인을 한 거예요. 임상승인을 했다는 얘기는 사람에게 투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그런 약을 사람에게 투약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강 대표가 애초에 약을 개발할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가만 띄워 놓고 먹튀 하겠다. 또 이게 그 당시 승인이 안 나면 아예 본인의 지분을 팔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시다. 그런데 그 관계자들을 지금 한 명도 안 부르고 청문회를 하겠다? 그러면 이 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증인들도 불러야 되지만 이것은 더더군다나 기소유예 평계를 댈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영장전담 판사랑 김승원 후보자랑 양 모 씨가 모여서 찍은 사진조차도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법도 오염됐을 가능성을 보여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를 감독해야 될 법사위가 나서야지 이것을 감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증인 채택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께 청탁 문자’라는 말씀 하셔서 그것만 하나 이야기하고 갈게요.

그것을 청탁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곽규택 위원** 송구 문자. 바꾼다, 송구 문자로.

○**위원장 서영교** 그러니까 청탁 문자가 뭐예요, 청탁 문자가.

○**주진우 위원** 아니, 인사청문위원장한테 인사청문후보자가 문자 보내도 됩니까?

○위원장 서영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주진우 위원 문자 자체가 부적절하지요.

○위원장 서영교 아니, 문자 보낸 걸 청탁 문자 그러니까, 마치 뭐라도 저지른 것처럼 그렇게 왜곡하지 마시고요.

○주진우 위원 아니, 문자 자체가 부적절하지요. 그게……

○위원장 서영교 제가 정리를…… 이 말씀은 드릴게요. 말씀은 드렸는데……

○박형수 위원 갈 길이 머시다면서요. 뭐 이렇게 말씀이 많으세요, 갈 길이 먼데.

○위원장 서영교 아니, 내가 처음 알았는데, 11명한테 3년 탈탈 털려서 기소유예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나랑 똑같은 경험이 있어서 ‘도대체 그게 뭐냐’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날 본회의장에서. 그랬더니 그 얘기를 간단하게 하면서 그분은 저에게 그 문자를 보낸 거지요. 그러면서 내가 먼저 물으니……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의가 너무 발라서, 그분 말하기 전에 항상 ‘송구합니다’, 그분 말하기 전에 ‘아유……’ 이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예의 바르게. 그 예의의, 겸손의 표현이에요. 그걸 청탁 문자라고 하면 아이고, 또 수사 들어와야겠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주진우 위원 아니, 후보자와 인사청문위원장이 통화를 하면 어떡합니까.

○위원장 서영교 그분은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물었어요. 먼저 ‘이게 뭐니까, 왜 이런 게 이야기지요’.

○주진우 위원 아니, 물은 것 자체가 부적절하지요, 그거야.

○위원장 서영교 왜, 뭐가 부적절해요?

○주진우 위원 아니, 그러면 인사청문위원장이랑 후보자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면 됩니까?

○위원장 서영교 주진우 위원은 뭐 부적절 주진우예요? 뭐만 하면 부적절이고 뭐만 하면 청탁이야.

○주진우 위원 아니, 그것은 부적절한 거지요. 그게 적절하면 보도가 났겠습니까? 그게 적절하면 보도가 났겠어요?

○위원장 서영교 다음은 관규택 위원 토론해 주세요.

○관규택 위원 발언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와 가지고 청문회의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증인 하나도 없는 인사청문회 하고요, 그 후보자가 아무 말 대잔치를 해도 검증이 안 됩니다. 김민석 총리후보 어땠습니까? 배추 농사에 투자했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증인 아무도 채택을 안 했지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총리가 됐던 거예요.

이 김승원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강세찬, 양수진 이 사람들이 받는 재판에 대해서 민주당 위원님들은 실드 친다고 그러실지 몰라도 다 거짓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강세찬·양수진에 대해 가지고는 식약처 임상실험 부정 승인 취득, 제넨셀 회사에 대한 배임, 국책사업 지원금 편취 이런 걸로 해 가지고 1심에서 유죄선고가 됐고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그 당시에 강세찬에 대해 가지고는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가 재청구돼서 구속까지 됐던 사안이에요. 판결문을 보면 신약 개발을 빙자한 전형적인 주가 띄우기 사기 사건입

니다. 이것 되게 중요한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마치 무죄가 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강세찬·양수진은 뇌물공여 약속으로 추가로 기소가 돼 가지고 지금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무죄가 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뇌물 사건에 있어 가지고 기소유예를 할 경우에는 준 사람, 받은 사람이 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서로 간에 주고받은 금액이 너무 작거나 이럴 때 기소유예를 하는 것이지, 이런 사안처럼 준다고 한 사람들은 기소를 했는데 받겠다고 한 사람을 기소유예해 준 전례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서. 그것도 국회의원인, 당시 법사위 간사였던 이런 사람에 대해서 기소유예를 했다? 잘못된 기소유예인 겁니다, 누가 봐도. 이런 전례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양수진·강세찬을 비롯해서 당시에 영장에 대해서 관여했던, 사건에서는 브이 자를 그리면서 귀엽게 하고 계신 그 판사님 비롯해 가지고 당시에 이상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검사들까지 나와 가지고 ‘부당한 사건 처리 아니냐’ 그리고 ‘그 과정에 후보자가 개입한 부분이 있느냐’ 이런 것을 확인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련된 사람들을 다 증인 신청했는데, 좋아요, ‘너무 많다’. 이러면 최소한 양수진·강세찬이라도 불러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양수진 씨는요, 우리 9월 15일 인사청문회 하는 날, 같은 날에 본인 1심 재판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재판 때문에 증인 채택돼도 국회에는 못 나오겠다’ 하면 아마 불출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본인 재판 연기 신청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와 가지고 오빠 쉴드 쳐 주려고 본인 재판 연기까지 했던 말이에요. 증인 불러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위원장 서영교 그렇게 이야기하던가요?

○곽규택 위원 확인해 보세요, 왜 그런지.

○위원장 서영교 그렇게 이야기하던가요, 그쪽에다가?

예, 김의겸 간사님.

○박형수 위원 김의겸 간사도 하니까 저도 마지막에 한번 얘기합시다. 공평해야지.

○위원장 서영교 둘, 넷, 여섯, 몇 분 했어…… 3명 했어요.

○박형수 위원 간사끼리는 공평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간사 간에 형평이 있어야지.

○김의겸 위원 그래요? 아니, 저는 간사가 아니라 그냥 일개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저도 일개 위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의겸 위원 워낙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저희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지금 곽규택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당시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주진우 위원님께서도 ‘사법도 오염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보니까 여하튼 윤석열 정부에서 법원과 검찰이 뭔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외압을 받았거나 뭔가 미진했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강세찬 또……

○위원장 서영교 양수진.

○김의겸 위원 예, 양…… 그 사람들은 사실 일방적으로 처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김승원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권력의 핵심부에 계셨던 주진우 위원님이나 판규택 위원님께서……

○판규택 위원 내가 무슨 핵심부야. 감사해라.

(웃음소리)

○김의겸 위원 핵심은 아니셨나요? 저는 핵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핵심에 계셨던 분들이 자신의 정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을 하는 것을 보니 호기심이 더 생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기심이 생기는데……

○박형수 위원 그러니까 해 보자고요. 자리해서 오해 있는지 해 보자고.

○김태규 위원 하세요. 호기심이 생기는데 하세요.

○김의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 조금만 더 들어 보세요.

그 호기심이 생기는 것은 상충부, 권력의 핵심부에서 결정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처분을 받은 일방적인 사람들은 그 구중궁궐에서 있었던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분들보다는 자료를 받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드는 생각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동훈 장관이 자료를 유출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됐던 2024년 8월부터 서부지검 하고 대검 사이에 김승원 후보자를 놓고 오고 갔던 수발신 문서 이것들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제가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해 보니까 서부지검에서 대검으로 최소한 세 번의 사건처리 계획보고서라는 것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가 8월, 두 번째가 9월, 세 번째가 12월입니다. 첫 번째는 상세보고를 했고요 두 번째는 요약보고를 했고 세 번째는 기소유예로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때 서부지검과 대검 사이에 어떤 문서들이 오고 갔는지 그 문서 일체에 대해서 받아 보면……

처분을 당한 사람은 뭘 알겠습니까? 대검과 서부지검 사이에 문서로 남아 있는 객관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그 증거를 받아 보는 게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훨씬 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효과적이고 객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규 위원 실체를 밝힐 필요성은 인정하시는 거네요. 그렇지요?

○김의겸 위원 예, 실체를 밝히는 것은 필요하지요.

○김태규 위원 그러면 증인도 같이 부르지요. 실체를 정확히 밝혀야 안 되겠습니까?

○박형수 위원 그러니까 불러 보자고요.

○김의겸 위원 그러니까 더 효율적이고……

○위원장 서영교 그래서 양당 간사가 더 협의하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박형수 위원 그러니까 하자고 했지요. 해 봅시다.

○김의겸 위원 예, 하세요.

○위원장 서영교 지금 자료 요구 마저 해서……

그때 서부지검에서 대검으로 보낸 그 자료 같은 경우는 수사 기밀 아니에요?

○김의겸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런 게 어떻게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도대체. 여기 불법이 또 하나 있는 것을, 다 탈탈 털어 내 봅시다, 이번에.

○곽규택 위원 우리 탈탈 털시다.

○김태규 위원 우리 탈탈 털기 위해서 증인 신청 좀 받아 주세요. 증인 좀 받아 주세요. 탈탈 털시다.

○박형수 위원 탈탈 터시는 것은 터시고 발언 기회나 주세요. 나도 발언해야 될……

○위원장 서영교 갈 길이 먼데……

○박형수 위원 위원장님은 댄 얘기 다 하시면서, 과거의 본인 얘기까지 다 하시면서 위원의 발언 기회는 안 줍니까?

○박균택 위원 위원장님, 토론 종결 요청합니다.

○박형수 위원 내 것 좀 하고……

○곽규택 위원 갑자기 무슨 종결입니까?

○김민전 위원 간사가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간사가 말씀하셔야지요.

○김기표 위원 그만합시다. 청문회 때 해.

○박형수 위원 나밖에 안 남았잖아. 한 사람밖에 안 남았잖아.

○곽규택 위원 한 번만 더 하시면 되잖아요. 3분 주세요.

○박균택 위원 지금 계속 같은 말이 오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을 내려 주십시오.

○위원장 서영교 너무 훌륭하십니다. 너무 훌륭하시고……

그러면 토론 종결 요청도 있었고 해서 토론을 종결하려고 하는데, 간사님이 또 그렇기도 하니까 2분만 드릴게요.

○박형수 위원 어이가 없네. 뭘 또 마음대로 2분이여.

○위원장 서영교 어이가 없으세요? 그러면 하지 마?

2분 하세요.

○박형수 위원 참 어이없어서 진짜……

○위원장 서영교 죄송합니다만 균택 위원님, 그렇게만……

○박균택 위원 예, 감내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죄송합니다.

여기 다 했어요. 그다음에는 하지 마시고 가요.

○박형수 위원 위원장님께서 아까 ‘인사청문회에는 증인 채택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수없이 해 봤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원장님이 행안위 위원장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의사일정 변경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회 인사청문회 증인신문은 공직후보자의 공직 수행과 도덕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데 필수적 절차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그때의 말과 지금 말이 이렇게 다르십니까? 그 말씀 한 말씀 지적드리고.

○윤상현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교 그것 쥬 보세요.

○윤상현 위원 이것 하나 갖다드리세요.

○박형수 위원 그다음에 한동훈 의원이 자료를 불법으로 유출했으니 어쨌니 지금 계속 그런 얘기를 민주당 위원들이 하고 계십니다. TF 구성됐는데 거기서 한다는 말씀이 그 얘기지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메신저를 공격한다는 얘기는 그 메시지 자체에서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잘못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공격하세요. 왜 그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 자료가 불법으로 됐으면 한동훈 의원이 처벌을 받을 것이고 정당한 공익 제보라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왜 자꾸 메시지를 공격 못 하고 메신저를 공격 합니까?

그다음에 아까 김승원 후보자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헌법소원했다고 그랬지요? 헌법소원 갈 것까지도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중국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에서 제기해서 기소하면 됩니다. 기소해서 법원에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가려봅시다.

그리고 이 청탁 자체가, 직무집행 자체가 부당하지 않았다고, 불법이 아니라고 결정문에 나온다 그러는데 그것은 법리를 잘못 아는 거예요. 그 청탁 대상이 된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금전과 결부되면 부정한 청탁이 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예요. 그래서 죄가 인정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겁니다. 좀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금전과 연결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박형수 위원 후원금이 금전 아닙니까?

○위원장 서영교 (임명장을 들어 보이며)

이것 양수진 씨 임명장이던데 윤석열이 준 임명장이더라고요. 여러분, 기가 막힌 임명장이네. 윤석열 부실장이 누구야, 도대체. 기가 막힌 양수진 씨 임명장은 국민의힘이 훨씬 더 가까운데 왜 윤석열·한동훈 체제하의 검찰은 이들은 하나도 안 털고 이들의 녹취는 하나도 안 털 건지 제가 지적할게요.

뜨금하지요?

(장내 소란)

○곽규택 위원 아니요, 전혀. 불려요, 불려. 너무 궁금해.

○김태규 위원 불려요, 불려. 얼마든지 불려. 부르세요.

○김동아 위원 일반 금도 아니고 상임위원장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상임위원장으로…… 상임위원장에 임명했어?

○김동아 위원 위원도 아니고 상임위원장입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요. 한번 불려 봅시다. 아이고 좋다.

○위원장 서영교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임위원장에 임명했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윤석열……

○박형수 위원 어떻게 저런 게 나왔는지 공격 한번 해 보세요, 불려 가지고.

○김민전 위원 좋아요. 같이 해요.

- 곽규택 위원 불려 봅시다.
 ○김의겸 위원 박형수 간사님,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번 증인으로 부르시다.
 ○박형수 위원 부르시다.
 ○주진우 위원 불려요. 같이 합시다.
 ○김태규 위원 그러시든지. 좋아요. 그것도 합시다.
 ○김민전 위원 좋아요. 증인으로 부르시지요.
 ○김의겸 위원 좋아? 그러면 협상하시지요.
 ○김태규 위원 다 합시다. 다 해요. 다 불려.
 ○위원장 서영교 이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컷 하셨지요?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김승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및 제6항 특별감찰관후보자(최길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김승원)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 및 제7항 특별감찰관후보자(최길수)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추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및 제8항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간사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간사 간 협의가 더 진행되기를 요청드리며 추후 심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들께서는 계속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고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해 안내말씀 드립니다.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르면 서면질의는 인사청문회 개최 5일 전까지 공직후보자에게 송부되어야 합니다. 구두질의요지서는 인사청문회 개최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공직후보자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법무부장관후보자 김승원 인사청문회 관련 서면질의서는 9월 10일 오후 5시까지, 구두질의요지서는 9월 14일 오전 10시까지, 특별감찰관후보자 최길수 인사청문회 관련 서면질의서는 9월 11일 오전 12시까지, 구두질의요구서는 9월 17일 오전 10시까지 행정실을 통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323)

1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1시07분)

○위원장 서영교 정무위 소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4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심정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간단히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정무위원회 소관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신고의 송부 및 종결 등 신고처리에 관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징수권 일부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검토한 결과 현행 시행령은 신고에 관한 종결 권한을 국민권익위 외에도 감사원 등 조사기관에 부여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조사기관의 종결처리 권한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추가하고 그 밖에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2항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님,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님,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을 하실 위원님 특별히 안 계시지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잠깐만.

○김태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서영교 몇 분이나 하시는 건데요?

○윤상현 위원 금방 끝낼게요.

○위원장 서영교 아니, 지금 갈 길이 멀어서요. 정무위, 행안위 그리고 과방위 이렇게 하고 또 고유법안 상정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 정도씩만 하시지요.

윤상현 위원님, 하시지요.

○윤상현 위원 존경하는 이억원 위원장님, 먼저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퇴임하신 이후에 어느 일간지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가입을 독려한 적은 없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해서 손실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 정부가 책임이 없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셨어요. 그것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있을까요, 위원장님? 일단 정부가 상품 출시를 했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제가 정무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겁게 받

아들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러면 ETF, 소위 말해서 단일종목 2배 ETF 이것은 원래 계획이 없었지요? 이것에 대해서 출시 계획은 아마 하반기로 됐는데 1월 달에 증권·금융사의 CEO 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또 갑자기 4월 달에 시행령을 만들고 5월 달 출시, 이러한 긴급하게 돌아가는 일정이 결국은 선거 때문이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적법하게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윤상현 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김용범 실장이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김용범 실장이 이 상품을 만들기 전에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하고 같이 만나서 자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박현주 회장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라고 그러지요. 그리고 최근에도 김용범 실장이 재임이 되신 다음에도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하고 비밀리에 저녁 회동을 합니다. 거기서 나온 술값이 1000만 원을 넘는다 이런 얘기가 막 들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김용범 실장에게 책임을 묻고 사퇴시켰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결국 이런 ETF, 인버스든 단일종목 2배든 이런 식으로 정책 결정을 한 게 금융위원회의 주도가 아니라 청와대 정책실장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정책실장의 주도가 결국 ETF 인버스 상품을 판매하는데 오히려 이득을 취할 사람들의 자문을 받고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금융위원장님은 어떤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이 부분은 그 당시 언론, 시장 그다음에 연구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외는 되고 국내는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들도 있었고요 또 정책적 필요성도 있었고요.

○**윤상현 위원**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도 급작스럽게 막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금융위원장님이 금융위원회의 CEO로서 목소리를 꼭 강력하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의 노선에만 따라가지 마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의겸 위원님 하시고 김태규 위원님 하시고 여기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있으니까 그때 한 번 더 하세요.

김의겸 위원님.

○**김의겸 위원** 지금 윤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김용범 실장, 1000만 원 술값’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억원 위원장님, 지금 그 내용 알고 계신 건가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아니요, 저는 모릅니다.

○**김의겸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김의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에 기반한 내용인 것은 아닌 거지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김의겸 위원** 그것만은 분명히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김태규 위원** 11번, 대규모유통업 거래 관련된 것, 이것 공정위에서 하나요?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예,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것 이런 취지는 알겠습니다. 빨리 기간을 단축시켜서 결제를 빨리 해주자는 취지인데 이렇게 되니까 지금 유통사들이 자금력이 여유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그리고 그러한 유통사들이 그렇게 되니까 결국 직매입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바꾸면서 오히려 정작 납품업체들은 납품 숫자를 줄여야 되는, 오히려 납품량이 줄어드는 그런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저희가 그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정무위의 여야 위원들과 다 논의를 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경제성 평가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그래서 현재 판단하기로는 자금……

○김태규 위원 경제성 평가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경제성 평가보다는 지금까지의 자금……

○김태규 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보통 이런 문제는……

○김태규 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경제성 평가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김태규 위원 안 했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예.

○김태규 위원 자료 제출한 적 없지요?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자료는 제출을 하지요. 지금까지 납품단가 대금 지급과 관련 해서……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경제성 평가를 안 했다는 것은 확실하네요. 그렇지요? 경제성 평가는 안 하였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실제 납품업체들이 받을 피해에 대해서도 고민을 안 해 보셨네요?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고민은 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그리고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자금 여건이라든지……

○김태규 위원 지금 모든 관련 유통업체들도 싫어하고 납품업체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자기들도 오히려 집단행동을 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납품업체도 싫어하고 유통업체도 싫어하는 것을 굳이 공정위가 나서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까요?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지금 저희가 만든 안은 직매입을 통해서 지금까지 납품업체들이 평균적으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긴 지급기한을 보장해 주고 있는 안입니다, 이 안은.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60일이라는 게 비록 긴 기간은 아니지만 약간의 어떤 재정적인 여유를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35일로 갑자기 줄여 버리는 거잖아요. 거의 절반을 줄여 버렸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그리고 사실상 55일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현 안에서.

○김태규 위원 어쨌거나 지금 최종적으로는 35일까지, 지금 줄이면 바로 35일로 해서

시행이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결제일로부터는 최대 55일까지 가능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말 기준으로 해서 35일이구요.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거나 지금 60일이 35일로 줄어들면, 준비가 제대로 다 돼 있습니까, 납품업체나 유통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현재 최대 65일까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월말 기준으로 해서 35일이나 그 전월에 1일 날 결제를 했을 때는 65일까지 여유가 있게 납품기간을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35일로 결제될 경우가 없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30일 날 결제되면……

○**김태규 위원** 35일로 결제될 경우가 없습니까? 35일 간에……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있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리고 현재는 60일이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현재는 60일입니다.

○**김태규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최대 이런 것 얘기하지 마시고 기준점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아니, 그만큼 협의를 통해……

○**김태규 위원** 기준점을 중심으로 60일에서 35일로 줄어들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납품업체들이나 아니면 유통업체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이렇게 빨리하시냐는 거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지금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피해에 대해서 저희가 범퍼를 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범퍼가 전월의 결제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최대 65일까지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최대치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지금 현재 평균 지급일이 30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0일이 넘는 기업은 10개 내외인데요. 그 10개 내외 기업들은 자금 여력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대기업이든지 아니면 대기업의 계열사들입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데 왜 유통업체하고 납품업체들은 다 싫어합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물론 유통업체의 입장에서는 대금 지급기한이 길어질수록 좋은 것은 당연합니다.

○**김태규 위원** 지금 납품업체들도 좋아하지 않잖아요. 이 상황을 납품업체들이 다 환영합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납품업체는 환영합니다.

○**김태규 위원** 다 환영하고 있다고요?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그렇습니다. 대부분 환영합니다.

○김태규 위원 지금 납품업체들 입장은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렇지 않던데요. 납품업체들이 지금……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규 위원 그것을 구체……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지금 말씀하시는 납품업체 단체들은 5개라든지 25개 소속 단체들입니다.

○김태규 위원 있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그러니까 대표성이 크지 않고요.

○김태규 위원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문제 많은 안건을……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반면에 중소기업중앙회라든지, 그러니까 가입 단체가, 5만 혹은 100만에 가까운 단체들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김태규 위원 그것 조사하셨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예, 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해서 데이터 제출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데이터 자료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데이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관련한 내용이라고 김동아 위원이 얘기하셔서 말씀 한 번 더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아 위원 저도 같이 발의안에 참여했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이것 관련한 내용이신 거지요?

○김동아 위원 예.

위원장님, 이 법이 왜 도입되게 됐는지 아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예, 물론 알고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그 당시에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서 납품한 소상공인들이 납품대금도 전혀 못 받고, 자기가 물건은 다 팔고 납품했는데 60일 동안 돈은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제도개선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그렇습니다.

○김동아 위원 그리고 이것 대규모유통업법이라고 하면 기준이 1000억 원 이상의……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대형유통업체들입니다.

○김동아 위원 그러니까 정말 큰 대기업들 위주의 이런 기업들만큼은 빨리 납품대금을 정산해 달라라는 이런 취지로 해서 들어간 법이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그렇습니다.

○김동아 위원 이런 부분이…… 아니, 물건을 팔았는데 60일 동안 돈을 못 받으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떤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합의를 한다면 조금 더 60일까지도…… 지금 이 개정안으로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저는 이 부분도 너무 길다라고 생각합니다. 물건을 팔고 맡겼

으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바로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그것을 무슨 담보대출로 해서 대출을 일으키고 새로운 금융을 일으키고 해서 또 금융기관에 대한 책임도 부담하게 되고 너무 복잡한 거래 현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그래서 예외조항들이 악용되지 않도록 공정위가 철저하게 감시하고요. 이 법률이 통과되고 몇 년 동안 문제없이 잘 운영이 되면 저희가 예외조항들을 다시 개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아 위원** 제가 그때 산자위에 있으면서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분들 보면 정말 자기가 몇십 년 동안 일궈 온 사업을 그 60일간의 납품대금을 못 받음으로 인해서 날려 버리는 그런 사안을 봤습니다. 이 법안이 제대로 통과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김동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이것 관련한 겁니까?

○**김민전 위원** 예.

○**위원장 서영교** 토론해 주십시오.

○**김민전 위원** 김민전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한국 의회보다 미국 의회에서 더 유명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미 간의 통상마찰 혹은 또 미국 의회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저한테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지금 김동아 위원님의 말씀에 상당히 동의하고 그 문제의식에 동의합니다. 티몬이나 위메프가 넘어갔을 때 납품업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들을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의도로 만드는 법이 정말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 저는 그것은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대형유통업체들의 강제 휴일 만들기라고 하는 게 중소마트들을 살리자, 골목상권 살리자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지금 대형유통업체들도 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공정거래위원장이 자금력이 좋다고 얘기했지만 홈플러스, 세븐일레븐, 이마트 다 엄청나게 지금 영업손실을 겪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다가 홈플러스와 같은 경우가 또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대형유통업체들이 넘어가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넘어가서 생기는, 이미 납품한, 기납품한 업체들의 대금 미지급금으로 인해서 받는 고생도 있지만 판로 개척이 어려워지는 게 저는 더욱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만약에 직매입을 하지 않고 다 중개만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농수산물 업체들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대형업체들이 직매입을 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자금력이 더 돌아가는 부분이 있고 매출이 늘어난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게 좋은 의도로 만드는 것이지만 정말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전반적으로 소비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서 이 대형유통업체들도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좀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 좋은 의도로 싹둑 자르자 그러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것은 저는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

을 합니다.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지금 방금 직전에 김태규 위원님이나 김민전 위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해 주셨고요. 저희가 이 법률 디자인할 때 그런 우려를 최대한 상쇄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디자인했고 그래서 직매입이 아닌 경우는 20일로 상당히 많은 폭을 단축했습니다. 그게 야당 위원과의 공감도 있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법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작용들이 일어나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추후에 또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한번 이번 법 개정을 지켜봐 주시면 좋은 성과가 있도록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위원장님, 저 짧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아니, 이제 시간이 없어서요.

○**주진우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서영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정무위를 다 통과해서 온 법안이잖아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한을 30일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40일을 주장하다가 중간에 35일로 합의 본 겁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력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이 법안을 그냥 미루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국민의힘 간사님께서도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다음번에 해 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이에 조금 조정을 하시게 우선 2개의 법안만 먼저 통과하고 공정거래위원장님이 계시는 동안 잠시 소통을 하셔서 다음 전체회의에 계류할 거냐 아니면 오늘 통과시킬 수 있느냐를 소통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님들은 이게……

○**김동아 위원** 이것은 월권입니다.

○**김용민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체계·자구 심사라는 상관 없어서 조금 어렵게 보입니다.

○**곽규택 위원** 월권이 아니고 그럴 수 있는 거지, 왜.

○**위원장 서영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이것을 바로 통과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소통하시고 이해시키고, 오늘 통과시킬 건데요 그 시간을 조금 갖겠다는 겁니다.

○**박형수 위원** 뭘 오늘 통과시켜? 하여튼간 일단 간사 간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위원장 서영교** 그러니까 간사님 얘기하셔서 오늘 중으로 통과를 시킬 수 있게 이해를 시키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박형수 위원** 충분히 이해해요.

○**김동아 위원** 같이 하셨잖아요.

○**박형수 위원** 내가 산자위에 같이 있을 때 이게 티메프 사태가 터졌을 때 그때 줄여야 된다는 것이 그 사이에 터져 가지고 다 납품대금 못 받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줄여야 된다는 게 다 공감대가 있었는데 막상 줄이는 거로 하니까 납품업체들에서 오히려 우리한테 더 불이익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취지예요.

○**김동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기업 유통망은 따로 보호하고 지원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납품업자들의 고향을 빨아서 지원하는 것은 좀……

○**박형수 위원** 아니, 유통업체가 아니고 납품업체 말이야.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잠시……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그것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완 설명을……

○**위원장 서영교** 예, 한번 설명해 주 보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지금 반대하는 입점업체단체는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인데 이 협회에 가입한 회원사는 27개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한 협회가 한국중소상공인협회인데 여기에 가입한 회원사는 6개입니다. 반면에 찬성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은 136만 명이고요.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원은 6만 2000개 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반영하셔서 이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잠시 5분 시간 드릴 테니까 나갔다 오시겠습니까? 간사님 좀 나갔다 오시고요.

그 사이에 먼저 다른 것 의결하고 잠시 시간을 두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2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그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항은 의사일정 제11항의 법률안입니다. 잠시 의결을 보류하고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원 위원장님 그리고 정일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주병기 위원장님은 잠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밖에 대기하시고 잠시 간사님들과 논의가 얘기되고 나면 저희가 그다음…… 저기 자리에서 대기하셔도 되고…… 어디 대기하시면 됩니까? 이 자리나 아니면 여기 자리에 대기하시고 아니면 소회의실이나 그렇게 대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리를 행정실에서 좀 안내해 주십시오.

1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7)

14.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56)

1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62)

1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59)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8)

1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32)
1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9)
20.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1)
2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2)
2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31)
2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5)
2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6)
25.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7)
2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9.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0.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5.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4625)

(11시28분)

○위원장 서영교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35항까지 2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최기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35항까지 이상 23건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1쪽, 아래 부분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유재산 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18조의4에서는 공유재산 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거나 이를 정하도록 위임하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의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경찰공무원이나 운전면허 소지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수시 적성검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불법주정차 행위를 무인단속장비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89조의2의 수시 적성검사 요청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이 경찰청장이 제공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요청 대상자가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명확히 하고 수시 적성검사 실시 요청 사유·방법과 대상 해당여부의 판단 기준·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방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접경지역 내 미활용 군용지의 현황을 제공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에서 ‘접경지역 내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및 공익사업 활용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고 있으나 제27조의2제2항부터는 별도의 약칭 없이 ‘미활용 군용지’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접경지역 안의 토지로 한정되는지가 문언상 명확하지가 않아 이를 명확히 지칭하도록 약칭을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 제26항, 제30항부터 제32항까지 및 제34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5항까지 및 제29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님 오셨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직무대행님 오셨습니다. 최용철 소방청장님 출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 경찰청장직무대행님과 최용철 소방청장님께서도 최근에 취임하셨습니다.

처음 법사위에 출석하셨기에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김종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되는데……

○경찰청장직무대행 김종철 우선 인사할 기회를 주신 서영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김종철입니다.

최근 우리 경찰을 바라보는 국민……

○위원장 서영교 마이크에 대고 크게 좀 해 주십시오.

○경찰청장직무대행 김종철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높은 현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경찰을 기본부터 다시 재설계한다는 각오로 경찰 업무 전반을, 특히 조직문화까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다음은 최용철 소방청장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청장 최용철 소방청장 최용철입니다.

저희 소방에서는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최근에 저희 소방 조직 내에서도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저희들이 조직문화 쇄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감사합니다.

행안위 안건들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진우 위원님과 윤상현 위원님 토론하신다고 했는데 주진우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주진우 위원 김종철 경찰청장대행께 좀 하나 여쭙보고 싶은데요. 제주도 실종 사건 이후로 지금 사실 국민 비난이 큰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장기간 연쇄살인 사건이거나 장기간 미제살인사건에 대해서 경찰청 차원에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적이 상당히 오래 전에 한번 있었거든요. 전국의 실종사건이 지금 많은 상태에서 제주도에서 있었던 그런 일이 전국 단위에서 없었다는 보장이 없고 기본적으로 실종사건인 경우에는 골든타임이 되게 중요하고 가족들 입장에서는 피가 마르는 일인데 실질적으로 장기 실종사건에 대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담당자 한 명이 그냥 사건만 관리하면서 더 이상 뭘 안 하거든요.

실종사건에 대해서는 전수 점검하는 경찰청 차원의 큰 수사팀을 만들어서 그런 TF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김종철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일시적인 것 말고요. 그냥 진짜로…… 그때 장기 연쇄살인사건 몇 건은 해결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 가족을 생각하면 제가 장담컨대 실종사건이 이 정도 되면…… 제주도의 부경장이 들고 있었던 사건만 거의 몇백 건이었지 않습니까? 각 경찰서별로 다 몇백 건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청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특별 TF를 만들든지 해서 전수로 확인하면 상당한 실종자를 찾는다든지 강제수사를 통해서 또 실종자 관련된 것을 계속 리뷰를 하다 보면 가족들 입장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 아동 실종사건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는 말씀처럼 하지 마시고 특별팀 좀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하시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김종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 3년간 비대면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 31만 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주진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단 종결한 것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종사건, 원 사건 자체를 제대로 뒤져 가지고 계속해서 몇 달간에 걸쳐서 점검하면 피해자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 어제 올림픽공원에 핸드볼경기장 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

기 보니까 투표함 있는 데는 폴리스라인을 쳤더라고요. 투표함 있는 곳에는 경찰이 접근을 안 한 겁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김종철** 예, 투표용지가 보관된 장소에서는 특검과 선관위에서 직원들을 파견해서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현장을 직접 통제를 했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러면 안 건드렸다는 얘기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김종철** 예, 투표용지의 무결성을 확보한 상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윤상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윤상현 위원**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수청 김지용 후보자 평판이나 여러 측면에서 합리적인 분이다 듣고 있습니다마는 여당 일각에서 과거 형사부장—당시에 형사부장을 했지요—검사의 수사권 축소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고 또 그러니까 현재 중수청, 공소청으로 분리된 수사·기소 분리 이 문제에 대해서 철학이 공유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명을 철회하라라고 주장하고 대통령께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장관 입장은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중수청장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증을 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직접 해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시에 대검 형사부장으로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형사부장은 이제 주로 보완수사를 담당하는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이라서 대검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금의 검찰개혁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의 인권 수호와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데 대한 기본적인 철학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장관님, 지금 개청이 10월 2일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윤상현 위원** 그런데 인력도 보니까 중수청 인력이 60%밖에 못 채웠다, 또 장비도 준비가 안 됐다, 또 자체적인 형사정보시스템도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게 제대로 출범이 되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우선 장비나 시스템은 필수 장비, 필수 시스템은 갖추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인력에 대해서는 원래 개청과 동시에 모든 인력을 채우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선 검찰청으로부터 이체받는 인력을 확보한 뒤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경력채용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윤상현 위원** 중수청, 부패, 경제, 마약, 방위사업 소위 말해서 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이렇게 검찰 쪽에서도 안 넘어오고 그러면 이런 수사 전문성 어떻게 확보하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검찰의 인력, 특히 검사와 수사관들과 관련해서는 모든 분들을 검찰로부터 검찰 출신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한 인력이 확보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용민, 김남희 두 분 위원님 토론하시고 토론은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장관님, 저도 좀 이어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이번에 공소청 직제규정이 나왔는데 직제규정은 그래도 행안부가 주무부서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김용민 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계속 얘기하면서 수사권이 없는 조직, 공소청은 수사 인력으로 있었던 분들이 대거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과 검사는 공판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논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공판검사는 하나도 늘리지 않고 사법통제부나 그리고 또 중대범죄부나 이런 사실상 수사 지휘하는 부서만 잔뜩 늘려 놓고 인력을 그대로 가져가겠다고 해서 지금 밖에서는 이거 검찰개혁 다시 원점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상당히 큼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우선 이해를 구해 드리고자 하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 일정이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청 직제령에 대한 입법예고 시한이 있어서 법무부와 충분히 합의를 이뤄 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선 직제령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들어서 지금 수정안을 논의 중에 있고요. 필요하다면 입법예고를 재공지를 하는 그런 방안도 고려 중에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수사·기소 분리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직제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국회랑도 상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김용민 위원** 그리고 제가 경찰이랑도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찰의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 결론은 그건데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미제사건이 한 14만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소청이 출범하더라도 90일 이내에 최대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긴 했지만 90일 이후에는 결국에는 다 경찰 혹은 중수청으로 넘어갈 텐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14만 건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경찰에도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 그러니 검찰청에서 지금 수사를 하던 분들이, 수사관들이 경찰로 넘어와서 수사를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공소청법 부칙에 그래서 검찰청 직원들을, 수사관들을 다른 수사기관으로도 보낼 수 있게 근거 규정을 넣어 뒀습니다. 직제규정 수정하실 때 이 내용도 같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렇습니다. 중수청으로 인력 이체하는 것을 우선하고 중수청이 경력 채용까지 해서 정원이 다 차게 되면 검찰청에 있었던 인력 중에, 공소청의 넘치는 인력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공수처로도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희 위원님.

○**김남희 위원** 김종철 직무대행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찰 경력 중에 수사 부서에서는 얼마 정도 근무를 하셨어요?

○**경찰청장직무대행 김종철** 오롯이 수사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은 없습니다. 다만 정보

라든지 기타 일선 서에서 근무하면서 수사 업무를 지휘한 경험은 있습니다.

○**김남희 위원** 수사 부서에 근무한 경험이 없으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김종철** 그렇습니다.

○**김남희 위원** 지금 제가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경찰 현장에서 제가 얘기를 좀 많이 듣게 되는데요. 경찰 수뇌부에 계신 분들 중에 수사 경험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경찰 업무 중에 수사의 영역에 대한 중요도 같은 것들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최근에는 수사 인력이, 수사 부서가 기피 부서가 돼서 인력 보강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수사 부서가 업무는 많은데 책임은 무거워지는데 그만큼의 수사 부서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되지 않는다 그런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사실 10월 2일이 되면 경찰이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책임과 권한을 갖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과연 어떻게 하면 경찰 수사 부서가 이러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필요한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쯤은 확실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 기사를 보니까 국민이 참여하는 개혁단인가를 출범을 했더라고요.

○**경찰청장직무대행 김종철** 예, 오늘 오전에 출범했습니다.

○**김남희 위원** 오늘 오전에 출범했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개혁안이 언제 나오나요?

○**경찰청장직무대행 김종철** 개혁단에서는 수사 관련 분야를 포함해서 경찰 조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하나하나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 속도감이 있는 개혁안이 언제쯤 나올 수 있나요?

○**경찰청장직무대행 김종철** 당장 다음 주부터 단계별로 하나하나씩 추진을 계획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종합해서 따로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 내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나 국민들의 우려가 잘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0월 2일에 수사와 관련해서 닥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대응을 하기에다 부족할 시간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책도 마련하시고 국민들을 설득하셔야 될 준비가 필요한데 지금 사실은 저는 관련해서 보고를 전혀 받은 게 없거든요, 아직까지.

○**경찰청장직무대행 김종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충분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요. 매주 제 주관으로 TF 회의를 통해서 개정 형소법 이후에 우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특히 경찰 수사 부서의 인력 확충이라든지 예산 부분, 여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검찰이 가지고 있는 사건이 한꺼번에 우리한테 이관됐을 때 이걸 어떻게 국민 불안이 최소화되는 선에서 소화를 할 수 있는지 검찰청하고 협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짚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런데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쯤은 이미 충분히 검토한 대안을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김종철 예, 준비된 내용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토론해 주십시오.

오늘은 12시 20분에 끝내야 되는 중차대한 임무가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행안부장관님,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 9명 구성되어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중에 검사 출신 몇 명인지 아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제가……

○박은정 위원 모르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3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은정 위원 3명이예요. 1명은 윤석열·심우정의 참모였던 검사이고요. 1명은 윤석열 검찰 보복수사 지휘에 관여했던 검사입니다. 나머지 1명 검사 출신도 그다지 개혁적인 검사 출신은 아닙니다. 이런 검사들이 추천하니까 그 모양이에요.

경찰 출신 있습니까, 위원 중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경찰 출신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중수청이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중수청장후보가?

청와대 민정에서 검증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검증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진행합니다.

○박은정 위원 청와대 민정도 검찰 출신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지금 정부 인사 검찰 출신들 이렇게 포진하고 그 검찰 출신들이 윤석열 정권에 복무했던 검사들 이렇게 인사 하고, 그 검사들이 추천하고…… 중수청은 이제부터 수사할 거거든요, 앞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중수청은 수사하는 기관입니다. 당연하고요.

○박은정 위원 맞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또 검찰 출신이라고 해서……

○박은정 위원 중수청은 누구 수사하겠습니까, 앞으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진 중수청장이어야 합니다. 그런 중수청장이어야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에 맞게 정확하게 수사할 것입니다. 윤석열, 친윤 검사 출신이 거기에 부합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수청장후보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금 말씀은 친윤 검사가……

○박은정 위원 왜 친윤 검사인지 말씀드릴게요. 중수청장후보는 김학의 출금 사건 지휘 라인에 있었던 검사입니다. 그 사건은 전부 무죄 확정이 됐지요. 정진웅, 한동훈, 채널A 김언유착 사건의 수사검사, 기소에 관여했던 검사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친윤 검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윤석열 청장 때……

○박은정 위원 경찰청장대행님, 검찰에서 미제사건 넘어올 거잖아요.

○경찰청장직무대행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런데 경찰 내년 사건 수사비가 고작 3억 늘었거든요. 이거 해결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찰 수사…… 검찰에서 몇만 건, 10만 건 넘게 수사 사건이 넘어올 거고 그 사건들 경찰이 수사해야 되는데 수사비는 고작 3억 늘어 가지고 경찰이 수사 똑바로 하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김종철 지금 현재 정부예산안에 3억 정도 이렇게 증액된 걸로 돼 있는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 기관하고 국회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국회 단계에서 추가 증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은정 위원 많이 늘리셔야 될 겁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김종철 예, 위원님 많이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검찰에서 사건이 수십만 건이 넘어오는데, 경찰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비가 고작 3억 늘어 가지고 0.5%가 늘었는데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경찰이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면 수사 못 할 거거든요. 대행께서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김종철 예, 제가 직접 진행 상황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리고 보고해 주십시오.

○경찰청장직무대행 김종철 알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아 위원이 꼭 얘기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1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갈 길이 멍니다.

○김동아 위원 청장대행님, 요즘 경찰이 많은 수사를 하게, 지금 책임지고 수사를 하게 될 시스템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수사 인력의 전문성에 관해서 많은 국민들의 의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들여다봤더니 지구대 근무하고 교통경찰 근무하고 경호 근무하고 기동대 근무하시던 분들이 또 승진 앞두고 잠깐 수사 부서에 옮겨서 수사 부서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조직·인사가 운영되고 있다라는 제보를 많이 받았습니다. 수사만 담당하는 전문 인력은 전체 수사과에서 한 20%고 나머지는 다른 지구대 근무하시던 분들도 오고 경호대 근무하시는 분들도 오고 교통경찰 근무하시는 분도 오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된 수사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던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김종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상당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저희 경찰에서는 수사경과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수사 부서의 발령은 경과자가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경과자 먼저 충원을 하고 수사 경과가 없지만 일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사 역량이 검증된 동료들을 추가로 유입하고 있습니다. 아

올려 직무 과정에서도 수사 전문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동아 위원** 아니,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국수본 산하에 따로 수사 전문 경찰 인력을 배치하려고 했는데 그거 안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당시 경찰청 내부에서 수뇌부들이, 경찰청장이 ‘너네들 판살림 차리려고 하나’, 본인들 인사권을 놓지 않겠다, 경찰 수사 인력까지도 국수본이 아니라 경찰청에서 다 관리하겠다라는 내부 인사에 관한 이기적인 그런 판단 때문에 그 부분이 분리가 안 된 거지 않습니까?

지금 수사권이 분리된 만큼 경찰 내부에서도 수사 전문인력을 국수본으로 딱 한정해서 인사를 하게 이루어지게 만들어야지 지금 지구대 근무하시고…… 제가 그런 분들을 존경하고 훌륭하시지만 수사라는 게 법원의 판례도, 항상 바뀌어 나가는 판례도 공부해야 되고 새로운 법리도 확인해야 되고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대충 뭉뚱그려서 이 부서 했다가 저 부서 했다가 이렇게 돌려 가는 식으로 인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전문성을 키우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경찰……

○**위원장 서영교** 정리해 주십시오.

○**김동아 위원** 지방청에 수사 부서를 두고 있는데 지방청 근처에 사시는 경찰관분들만 지방청 수사에 지원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북부 의정부에 있지요. 의정부에 있으니까 의정부에 사시는 경찰분들만 수사에 많이 지원하고 나머지 분들은 수사를 하고 싶어도 의정부와 멀리 살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나 이런 분들은 지원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찰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조금 전 위원님 말씀은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형소법이 개정되면서 저희 경찰 지휘부의 수사 부서 전문화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는 많이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수본 중심의 수사 부서의 독립된 인사체계까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좀 더 궁금하실 때 저희가 또 따로 한번 간담회 형태를 취해 볼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5항까지 그리고 29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 제26항부터 제28항까지 및 제30항부터 제35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호중 장관님, 김종철 경찰청장직무대행님, 최용철 소방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 하셔도 좋습니다.

1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1시55분)

○위원장 서영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의결을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11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간사님들 간의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님 오십시오.

의사일정 제11항의 법률안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야기하셨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의견도 충분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찬성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으시고 그러나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그분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다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공정 거래위원회 위원장님이 현장의 이야기를 더 잘 듣고 실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예.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태규 위원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면서 반대의견에 넣어 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김태규 위원님께서는 반대의견을 표시하셨습니다. 기록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렸는데 주병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말도 듣고 싶은데 저희가 갈 길이 멀어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 간사 위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6.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14)

3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3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1시57분)

○위원장 서영교 다음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38항까지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률안의 심사를 위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들 법률안들은 지난 8월 26일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가 계류된 법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이미 들었으므로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님, 박형수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 세 분만 토론하시는 것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태규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김태규 위원** 위원장님, 지난번에 제가 예결위에서 좀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일단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중철** 예.

○**김태규 위원** 이 수정안대로 하면 지금 JTBC 사태 같은 경우는 이 규정에서 제외가 되는 거 맞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중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김태규 위원** FIFA나 아니면 IOC 관련해서 지금 JTBC 예산이 문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방송법 지금 수정안 내신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내신 거. 이 규정대로면 그 사안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중철**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다음에 지금 방송사들이 걱정하시는 게 뭐냐 하면, 여기까지는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고 여기서도 보면 보고서에 동의하시는 걸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강행규정으로 해 놓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걸로 해 놓으면 이 FIFA나 IOC를 상대로 협상력이 약해진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외규정을 법에 두면 좋겠지만 법에 못 두더라도 령이나 규정에 뒤서 필요하면 너무 무리한, 물론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가격선이면 상관없겠지만 너무 무리한 요구가 들어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지를 좀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한 입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혹시 고려하신 게 있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중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김태규 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

제가 질문을 먼저 다 드리고 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중철** 예, 그렇게 하세요.

○**김태규 위원** 어차피 나중에…… 제 질문 중에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답변을 주시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이 역시도 질문드린 부분인데 코바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코바코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코바코는 언론진흥재단하고 오히려 합치는 게 맞다, 그렇게 하는 게 언론진흥재단의 여유 있는 자금력이나…… 그다음에 코바코의 지금 경영난이 안 좋지 않습니까, 사정이 안 좋지 않습니까, 경제난이? 그렇지요? 그래서 그 둘을 좀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다. 아무런 관련도 없는 그리고 업무의 성격에 동일성도 없는 시청자미디어재단하고는 연결시키는 게 맞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는 지금 너무 방미통위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적 위주로 밀어붙

인다……

제가 좀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방미통위 위원장님께서 성과를 다른 부처 못지않게 먼저 내는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 전혀 관련성도 없는 기관 2개를 끌어모아서라도 합쳐지는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빠뜨리지 마시고, 지난번에 하나 빠뜨리셨는데 앞에 거 먼저 답변 주시고 뒤에 것도 답변 좀 주십시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첫 번째 문제는 저희가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게 되는 이유가, 입법 개정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취약계층이나 보편적 방송의 문화적 향유권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협상력과 관련된 부분들은 워낙 다변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공동협상 제도라든지 여전히 사전승인 제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보완적인 입법으로 포함되는 다양한 제도들을 통해서 방송사들이나 또 관계 방송통신사업자들까지 포함해서 이해관계자들과 저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조율해서 협상해 감으로써 오히려 그 부분들을 다운시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또 다른 예외를 둘 여지가 없고 또 법령상 되어 있는 부분들을 시행령으로 조정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태규 위원** 제가 짧게,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방미통위는 결국에는 대한민국 방송사들 지켜 내고 진흥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방송사들 입장에서는 대외적인 외풍, 국제적인 압력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방미통위가 나서서 막아 달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방미통위 입장에서는 너무 터무니없는 협상에 들어올 때는 적어도 우리가 내부지침으로라도 이거는 우리가 수용 못한다, 방송사들 여기에 응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자신감이나 여유 내지는 그게 내부규정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그러한 것 없이 모든 걸 강행규정으로,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하기 위해 뭐든지 다 해라는 식으로 나가 버리면 결국 방미통위가 방송사를 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전협의 제도나 다양한 자료제출 절차들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당사자들 위주로 조율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이번에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걱정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게 되어 있고, 내부지침에 혹시 필요하다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나중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보고를 따로 해 주시고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검토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거에 대해서, 검토 결과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입법적 조치도 저 역시

도 고민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두 번째 부분은 계속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는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하고 지금 거의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제가 12월 19일 날 발령받았는데 그것만으로도 저희 위원회가 가동될 수 없었고 지난 4월 1일에 이제 위원님들이 아직도 한 분이 못 오셨지만 가동되어져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장, 김의겸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 것처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져서 정책과 관련된 중앙 행정기관으로 설립은 되었는데 그 하위 집행기구, 연구·제도·정책 부분들을 지원하는 기구가 지금 미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산하 기관들과 협회에서 일부 그 부분들 저희 산하 협조, 협력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통합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필요에 의해서 이 부분들이 지금 된 것이고 실적 위주로 한다면 것은 아마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고, 이 기회에 저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회로 새롭게 규제와 진흥 기관을 연동하는 상태로 출범을 한 것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집행기구가 정비가 안 돼 가지고 못 되고 있는 부분들이 큰 배경이다. 그 배경하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의겸** 다음 김한규 위원님이시지요?

○**김한규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의겸** 김한규 위원님이요.

○**김한규 위원**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한번 논의했던 건데요. 37항 방송법 관련해서는 소급입법 관련해서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이게 부칙의 시행 시기를 정해 놓고 있어서 이 부분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소급입법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부칙 제2조 부분인데요. 현재 조항 하나로 돼 있는데 1항·2항·3항으로 나눠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실시간 중계 의무, 지상파방송을 통한 중계 의무 부과, 이 의무 부과 위반할 경우 금지행위를 규정한 조항, 이 두 가지, 그러니까 76조 5항과 제76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계방송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게 좋겠고요. 제2조 2항을 신설해서 나머지 조항들, 그러니까 보편적 시청권을 규정한 안 제76조제5항은 제외하고 또 협의체 지원과 재판매 권고를 규정한 안 제76조의4 등의 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국민 관심 행사부터 적용하고,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 3항을 신설해서 행사 1년 전 자료 제출을 규정한 제76조의6 규정은 논리적 완결성을 위해서 법 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이후에 개최되는 국민 관심 행사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을 수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6항부터 38항까지의 조항은 다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인데 이거 관련해서는 위원장님, 관계 부처 기관 간의 이견 조정은 다 된 거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 위원** 제가 알기로도 이견 없이 다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조

직을 새롭게 개편하는 거는 추가적으로 여기서 법을 수정하는 것은 다른 기관을 포함해서 통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벗어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론진흥재단 같은 경우는 방미통위 산하기관도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님?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범정부적으로 공공기관 기능 개혁 일환으로 여러 기관들 통폐합하는 거고 방미통위 산하 2개 공공기관을 통합해서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의겸** 지금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해 주신 거지요?

○**김한규 위원** 예, 맞습니다.

○**박형수 위원** 이거 방미통위에서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김한규 위원** 예, 방미통위에서 갖고 있는 의견도 맞는데요, 공식적으로 제가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의겸** 김종철 위원장님, 어떤 의견이신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김한규 위원님께서 여러 고려들을 하셔서 제안해 주신 부분들을 수용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게 같은 거지요, 지금 하시는 거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같은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의겸** 같은 내용이신 거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 위원** 방미통위에서 공식적으로 위원회로 의견을 제안하는 방법이 없어서 제가 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의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형수 간사님.

○**박형수 위원** 방미통위에서 가져온 방송법 개정안 관련 이 자료, 이걸 왜 오늘 아침에야 가져옵니까? 지금 이 소급입법 관련된 부분이 이 법률 중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제 이 법률을 이게 진정소급인지 부진정소급인지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계약 관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미 법률 관계가 종료됐다고 보면 진정소급이 되는 것이고, 그게 단순히 행사가 뒤에 개최된다고 해서 부진정소급이 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 해소했으면 그런 고민 안 해도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미리미리 좀 제출해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겸 간사, 서영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이 부분은 부진정소급 또는 진정소급 관련된 부분은 물론 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적용한 걸로 하면 해결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도 저는 과연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맞겠느냐……

일단 지상파방송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부분, 이게 과연 아까 김태규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중계료 협상을 하는데 이게 유리할 것인지 불리할 것인지, 아마

또 방미통위 위원장은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의무적으로 우리 지상파방송 중에 하나가 반드시 중계를 해야 된다 그러면 계약하는 입장으로서는 높이지 그것 낮춰 주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상파방송이 중계하도록 한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협상에서 불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을 왜 만드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고.

또 하나는 각 방송사도 지금 독립된 법인이잖아요. 지금 각 방송사들이, 지상파방송도 몽땅 다 적자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여기에 참여해야 된다 그러면 자기들의 경영상 우리는 도저히 이만큼의 중계료를 내고 참여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데도 어느 군데 하나는 참여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방송사 입장에서 보더라도 본인들의 적자에 대해서 정부가 보전해 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 책임경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강제하는 것이 맞겠느냐, 근본적으로 이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배된다. 중계를 내가 돈을 내고 딸 것인지 안 딸 것인지는 그 방송사에 맡겨 줘야 되지 그것을 지상파방송은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는 걸로 강제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폐해가 이걸 그대로 두니까, 이런 법률이 나오게 된 이유가 JTBC가 독점으로 계약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이미 해소됐어요. 독점으로 계약해 가지고 했다가 JTBC가 지금 망할 지경에 왔잖아요. 그렇게 모험적인 거래를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영이 큰일 난다라는 걸 이미 보여 줬어요. 그래서 그럴 위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률을 굳이 이렇게 통과시켜야 되나.

하나 빠뜨렸는데 시청자언론재단하고 통폐합하는 문제도 통폐합을 하는 것은 이익이 있어야 돼요. 그 조직을 통폐합함으로써 인해 가지고 효율성이 높아진다고든지 또는 인력을 감축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성격의 기관 2개를 합친다고 해 가지고 인력이 줄겠습니까, 비용이 줄겠습니까? 이것 왜 이렇게 합치는지 논리도 명분도 아무것도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법률은 다시 재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영교 간단하게 하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셔서 송구한데 최대한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협상과 관련된 부분들은 아까 김태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에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같이 도입되는 다양한 제도, 그중에서도 공동협상제도를 활용해서 실제적으로 그 부분들을 대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방송사의 사적자치를 제한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의 방송법 체계가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는 공적 책임하에 방송사들에게, 특히 전국 단위 방송이 가능한 지상파방송사들에게 특별하게 허가를 해 주는 제도입

니다. 그래서 그 공적 책임을 이행해야만 방송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특허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특허에 해당하는 공적 책임을 부담하는 차원에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고 그것은 보편적 시청권에……

○박형수 위원 그러면 비용을 국가에서 대 주든지 해야 될 것 아니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

○위원장 서영교 국가에서 좀 대 주라고 하시니까 그런 것도 잘 검토해 보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우려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이번 과정에서 많이 오가면서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야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과 걱정하시는 부분들 잘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시고요. 수시로 더 많은 위원님들과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시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 표결할까요, 아니면 반대의견이 있다고만 하고 갈까요?

(「표결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거수 표결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7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부칙 수정안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시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반대 6인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시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반대 6인 가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오늘 의결한 법률안들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미상정 고유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상정의 건

(12시17분)

○위원장 서영교 오늘 의사일정의 고유법안 중에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법률안들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13항부터 제132항까지의 법률안은 숙려기간 15일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위원회 의결을 통해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30)
40.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90)
41.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45)
4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42)
4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37)
4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5)
4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01)
4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18)
4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52)
4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22)

4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3)
50.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55)
5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48)
5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2)
5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2)
5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5)
5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07)
5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60)
5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75)
5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84)
5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37)
6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93)
6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4)
6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16)
6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48)
6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568)
6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4)
6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3)
6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05)
6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40)
6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5)
7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64)
7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6)
72.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85)
7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43)
74.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41)
7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52)
7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94)
7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12)
7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 2213869)
7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61)
 8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06)
 8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41)
 8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86)
 8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65)
 8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62)
 8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53)
 86.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9)
 8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69)
 8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79)
 8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569)
 9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26)
 9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68)
 9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96)
 9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9)
 9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67)
 9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67)
 9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08)
 9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9)
 9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8)
 99.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87)
 100.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25)
 101.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18)
 10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94)

10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47)
10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78)
105.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79)
106.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80)
10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24)
10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22)
10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7)
11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25)
11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3)
11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48)
113.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6)
1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3)
115.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0)
116.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6)
117.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2)
11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1)
119.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4)
1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4)
1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0)
12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9)
123.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9)
12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7)
12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3)
126.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5)
127.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6)
12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1)

129.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운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21202)

13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8)

131.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3)

13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89)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부터 제132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9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된 것으로 대체하고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심정희 수석전문위원, 윤상열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 이세진 전문위원 네 분께서 서면으로 검토보고서를 내기로 합의하셨다는 아주 훌륭한 제안이 있어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진수 법무부장관직무대행님,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님,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님, 이두희 국방부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안규백 장관께서 국외 출장으로 대리출석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토론 있으시면 토론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토론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손 들어 주십시오.

○**박형수 위원** 어차피 1소위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특별한 저것……

○**위원장 서영교** 1소위에서 해야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생략하고자 하는데, 박형수 간사의 의견인데 그러면 세 분 손 드셨으니까 2분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위원님, 김용민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세 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윤상현 위원** 법원행정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손봉기 후보자를 청와대에서 반려한 이후에 대법원에서 어떤 식으로 다음 후보자 추천할 건지 정하셨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대법원장님께서 숙고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재제청을 한 역사적인 사례가 없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행정처에서 일단 입장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헌법 104조 2항이 결국 제청권이나 임명권이나 국회 동의권이나 똑같은 권한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위원님, 전례가 없던 사례라서 심도 있는 검토가……

○**윤상현 위원** 그러니까 청와대의 입장은 손봉기 후보자를 일단 제하고 나머지 김민기, 윤성식, 박순영 후보자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다시 한

다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법원조직법에 의해서 다시 구성해서 해야 한다, 이런 입장 정리가 안 돼 있습니까? 이게 언제 때 일입니까, 벌써 1월 달 얘기 아닙니까? 노태악 대법관이 사퇴하신 게 3월 달이고요. 지금 9월, 10월인데 아직까지 입장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게 대법원장 혼자만 결정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법령 검토를……

○**윤상현 위원** 그러니까 법령 검토를 해서 대법원장께 말씀을 드려야지요. 그러면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처장님?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검토 중에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입장 정리가 안 됐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윤상현 위원** 어떤 가닥도 아직 안 잡혔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여러 가지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일단 그러면 대통령의 재제청권에 대한 입장, 이게 헌법상 어떤 위반이다 아니다, 적법하다 그것부터 입장을 정리하고 다음 단계에 대한 것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알겠습니다.

○**윤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지귀연 판사가 공수처에 기소됐습니다. 직무 배제 안 합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부분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신속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사재판을 받는, 그것도 술 접대받은 판사한테 재판을 받은 국민의 심정은 어떻겠는지 고려해서 빨리 조치하십시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알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리고 보니까 지귀연 판사의 재판을 하는 사람이 지귀연 판사와 동기인 판사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재배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재배당됐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용민 위원** 징계합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

○**김용민 위원** 그것도 신속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알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법무부차관님, 직제 규정이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조금 전에 행안부장관께서는 다시 상의해서 수정할 부분 수정하겠다고 답변하셔서, 수정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진수** 입법예고에 따른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서 그 부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런 것을 전제로 제가 그 부분을 더 파고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두 가지는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공소청법 부칙 7조 1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청 직원을 재배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안 보내고 중수청으로 가겠다는 사람만 보내고 나머지는 공소청으로 다 끌어안으려고 합니까? 이것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그 지점에 대해서는 정원 이체 관련해서 수사관들의 의사를 먼저 확인을 했었고요. 아시다시피 2300여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김용민 위원** 제 얘기는 꼭 가겠다고 안 하더라도 이 법에 따라서 다른 기관에 보낼 수 있는데 보내려는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정부의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공판검사를 지금 대폭 늘려야 되는데 300명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기소한 검사가 공판까지 관여하는 것이 사건을 제일 잘 알고 피해자 구제에 가장 바람직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도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먼저 기존의 검찰수사관들에 대해서는 수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 왔기 때문에 본인들의 희망을 반영해서 중수청 수사관 등으로 전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 관련해서는, 두 번째 질문 사항이……

○**김용민 위원** 공판검사를 대폭 늘려야 되는데 왜 안 늘렸는지와 기소검사가 공판까지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판검사들이 2개 재판부 등을 담당해서 일주일에 4일~5일 공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판검사의 증원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지금 중수청과 분리된 상황에서 인력 진단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증원 부분을 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대범죄전담부 등에 있어서 부서들의 직제가 지금 발표가 되어 있는데요, 그 부서들은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한 사건들을 송치받아서 증거 관계에 대한 판단을 한 다음에 기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대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직관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할 얘기 많지만 일단 나중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교** 중대범죄 관련해서 일이 많은데 마지막에 뭐를 확대해야 된다고요, 직관?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중대범죄전담부 등으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서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고 증거 관계가 복잡한 사건을 처리하고 기소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 기소한 검사가 함께 직관을 통해서 공소 유지까지 책임지는 것이 확대되

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중대범죄전담반.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전담부.

○위원장 서영교 중대범죄전담부,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도 좀 잘 들으시고요. 말씀처럼 공판 검사 숫자가 너무 적는데 지금 말씀처럼 그러면 그건 검사 증원이 더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니시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검사 증원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아,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지금은 그 이야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서영교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렇게 사람을 보내고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말씀처럼……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위원님께서 왜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위원장 서영교 그 설명은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어쨌든 입법예고가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들어와 있으니 그 부분 잘 반영하시고요. 또 곳곳에 여야 위원님들의 의견도 잘 들으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한테도 보고조차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공소청 직제 관련해서는 그래도 법사위원장과 양당 간사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사위원장도 보고를 못 들었던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바로 입법예고가 돼 버리니까 우리도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 공소청을 새로 출범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형태로 출범시켜야 되니까 의견을 잘 수렴하시고 저희들에게도 좀 더 의견을 상호 교환하는 과정을 거치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사전 설명이 충분치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행안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협의가 이루어져야 직제가 발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유관기관에 설명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이해는 못 하겠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또한 중대범죄전담부 관련해서 우려가 많으십니다만, 굉장히 범죄 대응 역량과 관련해서 우려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융 범죄라든지 공정 거래, 마약, 기술 유출 등에 있어서도 앞으로 수사기관과 협력해서 이 부분들이 처벌까지 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렇게 살펴서 그렇게 직제안을 내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거니까 지금은 이쪽 얘기를 잘 들으시는 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저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언제나 국민을 위한 공소청, 국민을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경찰

청 이렇게 되는 것에 저희가 적극 힘을 쏟고 응원하고 예산과 여러 가지로, 하지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오동운 처장님, 의사일정 114항 공수처법 개정안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개정안에 공수처 구속 기간하고 수사관 관련해 가지고는 공수처 의견하고는 같은 것 같은데 나머지는 공수처 의견이 그동안 말씀해 오셨던 게 반영이 안 돼 가지고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 법에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에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 차장님도 1소위에 오셔 가지고 지난번 공소청법 관련해서 할 때, 형사소송법 할 때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검사 대 검사 간에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것은 맞지가 않고 협력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그때 차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견이신 거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위원님께서 그 부분 참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검사 대 검사, 대등한 기관 사이의…… 원래 보완수사요구는 수사 지휘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에 독자적인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결적인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수사요구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가 이루어졌는데요. 저희들은 누구나 그 구속 취소 결정이 문제가 많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구속 취소 결정이 아니라 검찰이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가지고 직권으로 석방을 하는 사태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완수사요구가 그때 만일 들어와 있었다면 내란 진압에 실패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보완수사요구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면 공수처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제도와 배치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유비해 보면 쉽게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수처법의 근본적인 취지에 반하는 그 제도는 정말 숙고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은정 위원** 공수처는 독립된 기관인데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를 경찰에 하는 게 검경이 지휘관계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하관계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가인 검사가 기소에 맞도록 구성 요건적 사실관계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것은 맞는데 공소청의 검사와 공수처의 검사는 모두가 법률가이고 공수처는 독립된 기관인데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경찰총경하고 중수청 4급 수사관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공수처의 요구, 이런 부분이 여기에 안 들어가 이번에 반영이 안 됐다는 의견이신데 그것도 맞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맞습니다. 10년 이하의 검사는 4급 수사관으로 지위가 부여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검사와 판사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가지고 있

는 공수처에 대해서 원래 수사권에 준해서 보면 4급 수사관에 대해서도 수사권·기소권이 부여되어야 된다는 것이 공수처의 기본 입장입니다.

○박은정 위원 이 법 개정안이 1소위에 넘어가면 공수처에서 의견을 활발하게 개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감사합니다.

○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려고 했으나 양쪽에서 한 분씩 더 요구가 있어서 김동아·김민전, 두 분만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김동아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김동아 위원 노경필 처장님, 한동훈 의원이 SNS에 엄청 심각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봤을지 모르겠지만 신약 로비 사건 관련해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법원행정처 차장을 친전을 들고 찾아가서 판사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내용의 SNS를 공개했습니다.

검사가 대법원을 찾아가서 판사를 변경해 달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사실관계는 확인 중인데 그러한 사실이 현재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

다. 아니, 관행상으로도 이런 부분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중요한 사건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 검찰에서 이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크게 알려지지도 않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도 찾아가는 것 정도면 다른 굵직굵직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검과 대법원이 서로 협력해서 판사도 지정하고 이 판사는 빼고 이 판사 넣고 이런 행위를 했을 수 있다라고 의심이 가는데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행정처는 재판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단 한 번도 판사 변경에 관한 요청을 받고 거기에 대해 수락한 적이 없습니까, 혹시 처장님 전이더라도?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저희는 그런 일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김동아 위원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박영재, 지금 현 대법관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시기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전인 김형두 현재 재판관인 시기인지, 박영재 현.....

○김동아 위원 박영재 대법관한테 물어봤습니까, 본인이 받은 게 맞는지?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물어봤습니다.

○김동아 위원 아니라고 합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말.....

○김동아 위원 한동훈 의원이 거짓말한 겁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저희로서는 현재까지 열심히 사실관계

를 확인했는데……

○**김동아 위원** 저는 심각한 사법농단이라고 봅니다. 사법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어느 특정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어떻게……

○**김동아 위원** 나중에 그거는 추가로 하고.

이진수 차관님, 한동훈 의원이 기소 계획서를 공개했습니다. 기소 계획서 공개될 문서 아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찰과 법무부 내부에서의 보고 자료로써 외부의 변호인이나 피의자·피고인한테, 참고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공개될 수 없는 내용인 것이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사건 처리에 관한 내부 보고서는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문서입니다.

○**김동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공개되어서도 안 되지만,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공개가 된 거예요? 참나, 불법이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저희 내부 구성원이 그런 유출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형사적으로도 공무상비밀 누설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불법 범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내부에서 조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감찰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감찰하셔야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고발되어서 수사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감찰하셔야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고 이러한 내용이 나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이런 일이 있는지 이걸 이번에 처음 알았네. 감찰하셔야지요.

밑에서 기소하잖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넘기고 넘기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올리고 위에서 허락하고 이런 과정이었네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꼭 이거 감찰하셔서…… 검사로 있다가 가지고 나가도 안 되잖아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서영교** 검사로 있다가 가지고 나가면 더 처벌해야 돼요.

다음은 김민전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김민전 위원** 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재제청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재제청 요구라고 하는 것은 헌법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헌법상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저는 법원이 사법적 독립을 위반하고 함부로 여기에 대응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

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앞에서 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강 모 씨에 대한 영장 판사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법부에는 제척이나 기피·회피 제도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영장 문제에 있어서도 같이 ‘v’ 자를 하면서 사진을 찍은 양반과 잘 아는 분의 영장을 그 판사가 기각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분노스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 최근에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가사소송 소장에 있는 개인정보로 인해서 전남편이 찾아가서 살인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제도개선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주소를 보고 찾아가서 살인이 일어난다 이거 정말 너무나 경악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물론 현재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지만 이 제도 자체를 모르는 당사자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에 대한 제도도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더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부터 제132항까지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겸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유법 심사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간사님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8항의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셨습니다. 진행하실 여유가 많지 않으셨을 것 같아서 계속 협의해 주시고 오늘은 일단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소청법과 형사소송법 부칙 개정안 또 이에 따른 여러 법안들이 발의되고 또 오늘까지 상정되는 과정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합의도 잘해 주셨고 수고도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들께서도 밤을 새우셨다고 들었습니다.

국민들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간혹 회의를 하는 것 같지만 이 회의가 진행되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준비를 해 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약 20개의 법안들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공수처법을 개정하는 과정 속에서 또한 새로 나눠서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준비해 주면서 역시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기관장들께서 나오셨는데 국방부차관님하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한마디 말씀도 못 하셔서 사무처장님부터 한 말씀……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오늘 전체회의에서 저희들 법안이 상정된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검토에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국방부차관님.

○**국방부차관 이두희** 법안1소위에서 진행되는 심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위원(16인)

곽규택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민전 김용민 김의겸 김태규 김한규 박균택
박은정 박형수 서영교 손 솔 윤상현 주진우

○청가 위원(2인)

박지원 이성윤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전문위원 윤상열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 이세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국방부

차관 이두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오동운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경찰청

청장직무대행 김종철

소방청

청장 최용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종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정일연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처장 노경필

○헌법재판소측 참석자

헌법재판소사무처

사무처장 손인혁

임시회의록